

구조안전 확인서

신고인	성명(법인명)	영업장 상호
	영업장 주소 (전화번호:)	

발코니 등 일반현황	발코니 등의 자재 종류			발코니 구조				기타
	외벽 (설치벽면)	바닥	난간	가로(cm)	세로(cm)	면적(㎡)	난간높이 (cm)	

검토결과	☐ 종합의견: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발코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하중 기준(5KN/㎡ 이상)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.
	☐ 기타의견: 년 월 일 검토자: 건축구조기술사 (자격번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소방본부장·소방서장 귀하

유의사항

신고인(영업주)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(완공) 신고서에 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